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0
----------	-----

제출년월일 : 1993. 4. 4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 공포('93. 2. 24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사항과 그동안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하므로써 광고물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임

□ 주요골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4 건)
 - 옥상간판 표시지역의 확대 : 상업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시장. 군수권한위임사항의 확대 : 군사시설차폐용간판규격설정권 →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의 차폐용간판규격설정권
 - 지상에 표시되는 애드벌룬 허가수수료 규정 삭제(신규표시허가 금지)
 - 플래카드 신고수수료 규정 삭제(현수막으로 통폐합)
- 조례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개선 (5 건)
 - 도시보행자안내표지판을 공공시설물로 인정
 - 타광고물과의 형평을 고려, 이. 미용업소표지등 신고수수료 경감
 -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관련규정 보완
 - 교육위탁기관의 교육계획서수립. 제출기한의 개선 : 1월말 → 2월말
 - 교육실시공고기한의 개선 : 2월말 → 3월말
 - 광고물의 안전도검사를 수탁. 대행하는 민간단체소속직원에게 대한 신분증교부
 - 과태료부과기준의 신설

□ 근거법령

- 관련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 기타 참고자료(별첨)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상업지역안의"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안의"로 한다.

제6조 제1호중 "지정벽보판"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삽입한다.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6과 같다.

제14조 제2항중 "매년 2월말까지"를 "매년 3월말까지"로 한다.

제15조 제5항중 "1월말까지"를 "2월말까지"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을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로 한다. 제2항중 "참작하여야 한다"를 "참작하여야 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로 한다.

[별표2]중 제3호 돌출간판 및 제7호 애드벌튼의 기준란과 지역별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14호 플래카드란을 삭제한다.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15,000	10,000
		. 3.5제곱미터 초과	20,000	12,000
		.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4,000	3,000
7. 애드벌튼	개	. 공중에 띄우는 것	15,000	10,000
		. 옥상에 표시하는 것	20,000	15,000

[별표5]중 제4호 "군사시설 차폐용 간판규격의 설정"을 "군사시설 및 고속국도
주요경계시설 차폐용간판 규격의 설정"으로 하며, 동호근거법령란의 "제20조
제1항"을 "제19조 제7항 및 제20조 제1항"으로 한다.

[별표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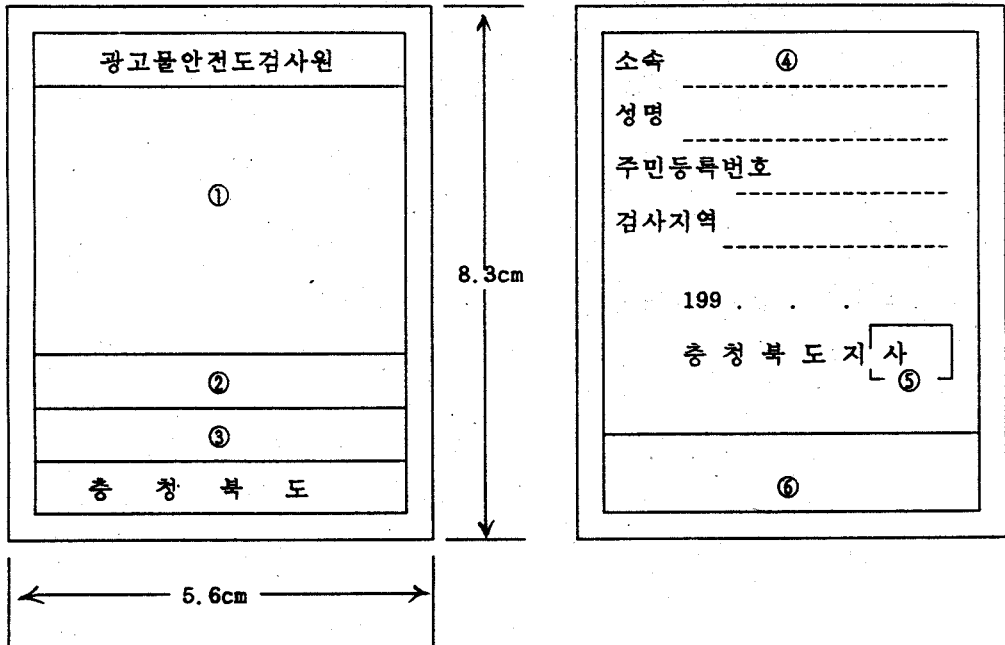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광고물안전도검사원증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전 면)

(후 면)



(주) 1. 위 ①②③등의 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 (4.9cm x 4cm)
- ② 검사원증번호
- ③ 성명
- ④ 직장명
- ⑤ 도지사직인
- ⑥ 아래 내용을 기재한다.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체바탕색깔은 초록색으로 하며 앞면 ③번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